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각국 주일 대사관의 인식

후지이 겐지(藤井 賢二)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고문)

머리말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하 ‘평화조약’이라 한다)에 의해 다케시마의 일본 보유가 결정된 것은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논점 해설: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의 취급’(본 사이트에 2022년 10월 11일 게재)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각국 주일 대사관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볼드 주일 미국 정치 고문의 본국 보고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는 이승만 라인 선언(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넓은 해역에 어업관할권(어업을 연안국만이 관할할 수 있는 권리)과 주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같은 달 28일에 이 선언에 항의했고, 이 해역 동쪽 끝에 다케시마가 있어 다케시마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2월 12일에 이에 대해 반박했고, 일본 정부는 같은 해 4월 25일에 재반박했다.

시볼드(William Joseph Sebald, 1901~1980) 주일 미국 정치 고문(주일 미국 대사에 해당한다. 당시 일본은 독립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주일 대사라는 직위는 없다)이 1월 29일자로 미국 국무부에 보낸 보고¹가 있다. 시볼드는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 이하 ‘총사령부’라 한다)의 외교국장을 겸하고 있었다.

보고의 Part I에서 그는 전날의 일본 정부 항의문²을 소개하고, Part IV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국이 이승만 라인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킴에 따라 이 섬의 영유 문제가 대두되었다. 일본은 SCAPIN에 의해 이 섬에 대한 정치상 및 행정상의 관할권을 빼앗긴

상태이다. 그러나 제외함으로써 평화조약의 문구는 영유권을 일본에 남겨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이는 총사령부나 연합국과 관계없이 일한 간 협상의 의제로 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SCAPIN이란 1946년 1월 29일에 총사령부가 내린 지령, 즉 SCAPIN-677³을 말한다. 그것은 다케시마를 제주도 및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다. 단, 이 지령이 일본 영토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것은 SCAPIN-677 자체에 기재되어 있었다. 일본의 영토를 최종 결정한 것은 1951년 9월 8일 서명한 평화조약이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제외함으로써 평화조약의 문구는 영유권을 일본에 남겨둔 것처럼 보인다(by exclusion, terms of Peace Treaty appear reserve sovereignty to Japan)’는 문구이다. 여기에서 ‘제외’란 SCAPIN-677의 ‘울릉도, 다케시마, 제주도’라는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과 평화조약 제2조 a항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의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교했을 때 평화조약에는 다케시마가 빠져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시볼드는 1949년 11월, 미국 국무부의 평화조약 초안에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가 조선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장은 오래되었으며 정당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미국 국무부에 수정을 요구했다⁴. 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같은 해 12월 작성된 평화조약 초안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이 보유하는 섬으로 수정되었다. 그 후 일본이 보유하는 섬을 열거한 조항은 없어졌지만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남긴다는 미국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었다. 1951년 8월에는 한국 정부의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요청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문(‘러스크 서한’)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면서 이 요청을 거부하였다. 시볼드가 이러한 경위를 몰랐음을 이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는 평화조약에서 일본 영토로 남겨졌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1 1950-52: 322.2 Boundary Waters (NARA, RG84 Records of Office of the U. S. Political Advisor for Japan, Tokyo Box No.64 Folder No.8). 원자료는 미국 국립공문서관 소장.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주일 미국대사관 영사관·정치고문부 문서」 청구 기호 FSP 0337.

2 「1952년(쇼와 27년)1월 이승만 한국 대통령의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에 대해 같은 달 28 일자로 일본국 정부가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구술서)」(「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 <https://www.cas.go.jp/jp/ryodo/shiryo/takeshima/index.html> 자료 번호 T1952012800101).

3 「약간의 외곽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건(SCAPIN-677)」(앞과 동일 T1946012900101).

4 쓰카모토 다카시 「평화조약과 다케시마(재론)」(『레퍼런스』 518 국립국회도서관 조사입법고사국 1994 년 3월) 41~43쪽.

한국에서는 ‘일본의 집요한 로비로 한 때 미국무성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초안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재하기도 했다.’(‘독도는 한국땅이다’의 III장 ‘전후 연합국의 조치로 본 한국의 독도 영유권’(동북아역사재단 웹사이트 게재)⁵⁾ 등과 같은 비난이 있다. ‘로비’란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시볼드를 이용해 미국 국무부를 설득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미국 국무부는 시볼드의 의견도 참고했겠지만 자신들의 정보와 판단에 따라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남기기로 결정했다. 시볼드의 보고는 이러한 사실을 부각시킨다.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하도록 1951년 7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기록(17일에 변영태 한국 외무부 장관이 무초 주한 미국 대사에게, 19일에 양유찬 주미 한국 대사가 델레스 국무장관 고문에게)⁶⁾ 은 주일 미국 정치고문부에도 보내졌다. 또한 뚝토리현립 사카이 고등학교의 실습선 ‘아사나기마루’ 승무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한 것을 비난하는 내용의 한국의 신문 보도를 정리한 같은 해 11월 28일자 주한 미국 대사의 국무부 보고⁷⁾ 역시 주일 미국 정치고문부에 보내졌다. 해당 보고에는 ‘독도는 대일평화조약 제2조의 섬으로 특별히 기재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요구한 섬 중 하나였음을 상기시킨다’고 기재되었다. 이들 정보에 대한 언급이 시볼드의 보고에는 없다는 것은 이승만 라인 선언으로 다케시마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는 그가 다케시마에 대한 관심이 적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그가 다케시마에 대해 1949년 국무부에 설득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즉 일본 정부의 ‘집요한 로비’를 담당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2 주일 영국 대사관의 본국 보고

1953년 5월 28일 시마네현 수산시험장 시험선 ‘시마네마루’의 승무원은 다케시마에서 한국인의 활동을 확인했다⁸⁾. 같은 해 6월 27일, 시마네현과 해상보안청은 합동으로 다케시마 조사를 벌여 상륙한 한국인에게 퇴거를 권고하고 일본 영토라는 표지를 설치했다⁹⁾. ‘독도침해 사건’이라며 일본의 다케시마 조사에 반발한 한국 국회는 같은 해 7월 8일, 일본에 강경한 자세로 대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같은 달 12일, 다케시마에서 일본 순시선에 대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¹⁰⁾. 다음 날인 13일, 일본 정부는 이 사건에 항의함과 동시에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견해를 담은 구술서를 한국 정부에 송부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두 차례에 걸친 항의의 응수가 있었고, 같은 해 9월 9일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견해에 대한 반론을 담은 구술서를 일본 정부에 송부했다.

1953년 7월 1일자로 주일 영국 대사관이 보낸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영국 외무성 보고¹¹⁾에는 ‘우리는 공식 간행물에서 그 섬(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자세한 역사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18세기 초 일본인 여행자들이 울릉도로 향하는 도중에 발견된 듯하다.’ ‘울릉도와 다케시마에 붙여진 명칭에는 다소 혼란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마쓰시마라는 명칭은 또한 다케시마에도 사용된다.’고 기록되었다. 글 속의 ‘18세기’가 ‘17세기’의 오류인 것처럼 영국 대사관은 에도 시대(1603~1868)의 다케시마 이용을 비롯한 일본의 역사적 근거나 1905년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시의 섬 명칭 교체 등과 같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단, 영국 대사관이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같은 달 5일자 『아사히 신문(시마네판)』에도 시마네현의 ‘도쿄 사무소에서는 영국 대사관으로부터 영토 귀속에 대한 조치가 있었다’는 기사가 있다.

1953년 7월 15일자로 주일 영국 대사관이 보낸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영국 외무부 보고¹²⁾는 같은 달 12일 다케시마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와 일본 정부의 영유 주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설명은 이틀전인 13일에 일본 정부가 내세운 견해¹³⁾의 다음 주장과 같았다.

일본 정부의 견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케시마의 취급에 대해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1952년 2월 12일자 반론에서 한국 정부의 영유 근거가 SCAPIN-677과 SCAPIN-1033뿐이었기 때문이다. SCAPIN-1033¹⁴⁾이란 총사령부가 일본 어선의 조업합계선(이른바 맥아더 라인)을 개정하여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인의 접근이나 접촉을 금지한 1946년 6월 22일자 지령이다. 일본 정부는 SCAPIN-677과 SCAPIN-1033에 대해, 이들 지령 자체에 일본 영토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전제로 미군의

5 http://contents.nahf.or.kr/dokdo/item/level.do?levelId=bg_d_0095

독도는 한국땅이다 III. 2. 미국무성과 영연방의 입장에서의 독도의 위치발행일 : 2008.7 2024년 7월 24일 마지막 열람.

6 1950-52: 320.2 Peace Treaty, June – July 1951 (NARA, RG84 Records of Office of the U. S. Political Advisor for Japan, Tokyo, Box No.62 Folder No.1). 원자료는 미국 국립공문서관 소장.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주일 미국대사관 영사관·정치고문부 문서」 청구 기호 FSP 3781.

7 1950-52: 322 Territory (NARA, RG84 Records of Office of the U. S. Political Advisor for Japan, Tokyo, Box No.7 Folder No.10). 각주 (6)의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주일 미국대사관 영사관·정치고문부 문서」 청구 기호 FSP 0560.

8 관련 신문 기사로 1953년 5월 31일자 『마이니치 신문』(오사카) 「다케시마에 한국인 상륙」(「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 자료 번호 T1953053100102), 동년 6월 4일자 『마이니치 신문(시마네판)』 「다케시마의 한국 어선」은 영해 침범인가, 조사 후 엄중 항의: 고다키(小瀧) 외무 차관의 말」(앞과 동일 T1953060400102).

9 「시마네현-해상보안청 합동 다케시마 조사 '복명서」(앞과 동일 T1953062800103).

10 관련 신문 기사로 1953년 7월 14일자 『산인 신문』 「다케시마에서 순시선 발포당하다」(앞과 동일 T1953071400202).

11 Japanese claim to Takeshima Island, also claimed by the Republic of Korea (TNA, FO371/105378, Code FJ file 1082). 원자료는 영국 국립공문서관 소장.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영국 외무부 본부 일반 정부 문서 일본 파일 1952-1974」 청구 기호 BFO-2.

12 각주 (11)과 동일. 『2017년도 내각관방 위탁 조사: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 보고서』(STREAMGRAPH inc. 2018년 3월) 36~37쪽.

13 외무성 정보문화국 「기사 자료」 시마네현립도서관 소장.

14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구역에 관한 건(SCAPIN-1033)」(「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 자료 번호 T1946062200101).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영국 대사관의 7월 15일자 보고는 전날 14일자 『요미우리 신문』 석간이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미영 양국에 중개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¹⁵ 사실을 다루고 있다. 이어서 일본 정부 외무성의 요청은 아직 없지만 가까운 장래에 있을 것이 확실하므로 그때는 신속하게 알려겠다고 보고했다. 중요한 것은 보고 마지막의 다음 부분이다.

5. 한편, 귀하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중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쌍방에 각자의 입장 제시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동서명국으로 되어 있는 평화조약 제2조에서 다케시마는 틀림없이 일본 영토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대사관의 인식은 ‘당장(preliminary)’이라고 하면서도 ‘다케시마는 틀림없이 일본 영토의 일부’를 형성한다(Takeshima unmistakably forms part of Japanese territory)는 것이었다. 이 역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견해에서 평화조약 제2조 a항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다케시마는 ‘이미 일한 병합 이전에 시마네현의 행정 관할하에 있었으며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놓인 적은 없었다’. 제2조 a항에서 말하는 ‘독립된 조선’에 일본 영토였던 다케시마를 할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2조 a항에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열거한 것은 ‘독립된 조선’에 이들 세 섬이 포함됨을 ‘만약을 위해’ 밝힌 것이며 일본 영토였던 다케시마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영국 대사관의 담당자는 “it appears”, “it seems”, “the texts indicate” 등과 같은 애매함이 포함된 어구가 아니라 “unmistakably”라고 강한 표현을 사용해 일본의 영유 주장을 지지했다. 한국의 영유 근거가 SCAPIN-677과 SCAP-IN-1033밖에 없으며, 게다가 그것이 일본 정부에 의해 명확하게 부정된 상태에서 이는 타당한 평가였다.

3 주일 뉴질랜드 대사관 작성 문서

1954년 5월 3일 순시선 5척이 경계하는 가운데 오키섬의 구미(久見) 어업 조함원은 시마네현 어업 단속선 ‘시마카제’에 승선하여 다케시마에서 해조류, 패류 등을 채취하고 어업권을 행사하였다. 같은 달 27일에는 ‘시마네마루’가, 같은 달 30일에는 돗토리현 수산시험장 시험선 ‘다이센’이 다케시마에 접근했다. 이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같은 해 6월 11일 한국 정부는 해양경찰대를 다케시마로 급파했고, 9월 2일에는 경찰 상주를 결정했다¹⁶. 같은 해 8월 27일,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에 대한 등대 설치에 항의했다. 같은 해 8월

23일에는 일본 순시선에 대한 총격 사건, 11월 21일에도 일본 순시선에 대한 포격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 정부는 그해 2월 10일에, 한국 정부는 9월 25일에 다케시마 영유 근거를 기재한 견해를 상대국에 송부했다. 작년에 이루어진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견해 교환도 일본 정부의 주장에 한국 정부가 반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같은 해 9월 25일에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기했고 한국 정부는 같은 해 10월 28일에 이를 거부했다.

1955년에도 일한 간의 긴장은 계속되었다. 1953년 9월부터 한국에 의한 동중국해에서의 일본 어선 나포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수그러들지 않았다. 1954년 7월부터 한국 정부는 이승만 라인 침범을 빌미로 나포한 일본 어선의 선원들에 대해 어업자원보호법이 정한 형기를 마친 후에도 귀국을 불허하고 있었다. 일본인 선원들은 빈약한 식사와 자유롭지 못한 생활에 시달리며 부산의 외국인수용소에서 억류 생활을 견뎠다. 일본 정부는 협상을 통한 제반 현안의 해결을 요구했지만, 같은 해 8월 17일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일본 왕래 금지, 대일 무역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같은 해 11월 17일에는 한국연합참모본부가 일본 어선에 대한 발포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의 어업 관계자는 이 성명에 항의해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뉴질랜드기록보관소에 1955년 10월 31일이라고 손으로 쓴 날짜가 기록된, 주일 뉴질랜드 대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JAPANESE - KOREAN RELATIONS라는 제목의 6페이지짜리 문서가 있다¹⁷. 앞서 언급한 일한 간의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것이다. 해당 문서의 (3) 다케시마 문제(The Takeshima Question) 부분의 전문 번역은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가 의심할 여지없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한 영토 요구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감행한 다케시마 침입과 같은 불법 행위를 발견할 때마다 강력히 항의해 왔다. 또한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 관점에서 분명히 일본의 영토임을 한국에 제시해 왔다. 한국 측은 반박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해당 서한에 일본 정부 주장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난해 7월 (원문 그대로)에 한국 정부는 실력 행사로 다케시마를 지배하고 경비대를 섬 위에 주둔시킬 정도로 대담해졌다. 그들은 등대를 건설하고 전신주를 세웠다. 현지 조사를 위해 독도에 온 일본 순시선 발포에 이어 한국 정부는 다케시마를 도안으로 한 우표를 발행했다.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 주장을 국내외에 선전하기 위해서였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동에 철저히 항의해 왔다. 그러나 분쟁의 평화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은 이 제안을 제시하고 한국 정부에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제안은 10월 28일에

15 각주 (12)와 동일. 『2017년도 내각관방 위탁 조사: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 보고서』 38쪽.

16 외무부 편간 『외무 행정의 10년』(1959년 5월) 513쪽, 국사편찬위원회 편간 『대한민국 역사 연표 상』(1984년 10월) 295, 303쪽.

17 Individual Countries - Japan - External Relations - Korea (ANZ, Item Code: R22230074). 이 문서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출장 의뢰로 조사한 뉴질랜드 국립공문서관에서 필자(후지이(藤井))가 발굴하였다. 참고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뉴질랜드 외교부의 조서에 대하여」(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웹페이지에 2023년 7월 24일 게재) 참조. <https://www.jiia.or.jp/jic/20230724-01.html>

거부되었다. 국제적인 사법의 장에서 자국 입장을 밝히고 공정한 판단을 구하는 이 기회를 한국 정부가 회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후 한국 정부는 실력 행사로 다케시마를 점령한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이에 항의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실행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의도이다.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 주장의 정당성을 전제로 한 문장이다. 그리고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다케시마 영유의 근거를 기재한 한국 정부의 견해에 대해 ‘일본 정부 주장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It did not contain anything that could shake the valid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s assertion)’며 한국의 주장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점에 눈에 띈다.

일한 양국 정부 간의 견해 교환에서 중요한 논점은 19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편입 전에 한반도에 있던 정부가 다케시마를 통치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였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한국 통치를 시작할 당시 이미 일본 영토이었다는 일본 정부 제1차 견해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제1차 견해와 제2차 견해¹⁸에서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이 침략이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는 (a) 1906년 울도군수 심홍택의 보고서, (b) 1904년 다케시마 대어 청원을 정부에 제출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다케시마를 조선 영토로 생각했다는 점, (c) 히바타 셋코(樋畑雪湖) ‘일본해에서의 다케시마와 관련된 일본-조선 관계에 대하여」(『역사지리』 55-6 일본역사지리학회 1930년 6월)의 기술, (d) 일본 해군 수로부 편간 『조선연안수로지 제1권』(1933년 1월)에서는 ‘조선 동안(東岸)’ 항에 다케시마에 관한 설명이 있다는 점, (e) 같은 책에 나오는 울릉도 주민들이 다케시마에서 벌인 활동 기록들이었다.

이는 모두 한반도에 있던 정부가 다케시마를 통치했다는 증거가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견해에서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1956년 제3차 견해¹⁹에서 ‘한국 측에서는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의 유효적 경영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측 문헌을 인용해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편입 전후에 한국 영토의 일부였던 것처럼 주장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이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 문헌의 인용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 해석을 내린 것이거나 현재의 다케시마와 울릉도를 혼동한 것으로, 방증으로 삼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한국 정부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한국 정부의 견해를 본 뉴질랜드 대사관 담당자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을 것이다.

또한 뉴질랜드 대사관의 담당자가 ‘의심할 여지없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라고 단정한 것은 뉴질랜드 외교부가 1953년 12월 2일자로 작성한 조서 ‘일한 관계, 특히 다케시마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후지이 겐지 ‘화조약과다케시마-영연방 제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본 사이트에 2024년 5월 28일 게재) 참조)가 이유일 것으로도 추정된다. 같은 해 12월 7일자로 뉴질랜드 외교부가 주일 대사관에 송부한 이 조서에는, 1951년 7월에 한국 정부가 호주 정부에 대해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로 하도록 평화조약 초안을 수정할 것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이 원한 의미에서의 제2조 a항의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화조약은 최종적으로 조인되었다’며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남겨진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었다.

맺음말

이상 검토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 3국의 주일 대사관의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인식은 모두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 남겨졌다는 것이었다. 물론 재외공관에서 본국으로 보낸 보고는 어디까지나 보고일 뿐 거기에 적힌 내용이 반드시 본국 정부의 견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시볼드가 ‘아마도 이는 총사령부나 연합국과 관계없이 일한 간 협상의 의제로 삼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마지막에 언급한 바와 같이 타국의 영토 문제에 개입해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중단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볼드는 평화조약의 문구를 통해, 또한 영국과 뉴질랜드 대사관은 일한 양국 정부의 주장을 검토한 후 그러한 인식에 이르렀다고 추정된다.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일한 양국 이외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들 문서의 가치가 있다.

18 두 견해는 한국 정부 외부편찬 『독도관련자료집(1) -왕복 외교 문서(1952~76)-』(1977년 7월)에 수록되어 있다.

19 각주 (18)의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